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3
----------	------

발의연월일 : 2018. 7. .

발의의원 : 김은영 의원, 도일용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8. 2. 20 일부개정)의 [별표 4]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의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는 설치대상에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별표 3 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 구간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군”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2018. 3. 26 일부개정)에 따른 달성군 의원정수가 10명으로 확정되고, 별표 3 제1호의 실·국 설치기준에 부합함.
- 이에 따라, 달성군의회는 내부적 자치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분권화가 구현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또한 제8대 달성군의회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의회사무기구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 사무기구를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확대 개편
- 의회 부서장을 “사무과장”에서 “사무국장”으로 격상
- 사무기구를 조정함에 따라 다른 조례의 조문 등 기타 불합리한 조문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로 한다.

제1조 중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 및 사무직원의 정수”를 “제91조에 따라 달성군의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사무과의 설치)”를 “(사무국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과를”을 “사무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과는”을 “사무국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사무국에 사무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사무과의 사무 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사무국장

제6조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별표] 공인의 규격 중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사무과장 직인”을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사무국장 직인”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군의회사무과”를 “군의회사무국”으로 하고, “군의회사무과장”을 “군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군의회사무과장”을 “군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군의회사무과”를 “군의회사무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과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u>	<u>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u>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사무과 및 사무직원의 정수</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91조에 따라 달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u>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u> ----- -----.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u>사무과</u>를 둔다. ② <u>사무과</u>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 ----- <u>사무국</u>을 --. ② <u>사무국</u>은 ----- -----.
제3조(사무과장) ① <u>사무과</u>에 <u>사무과장</u>을 둔다. ② <u>사무과장</u>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u>사무국</u>에 <u>사무국장</u>----- ---. ② <u>사무국장</u>----- ----- --.
제4조(전문위원) ①·② (생략)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u>사무과장</u>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전문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사무국장</u>-----.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u>사무과의 사무 분장</u>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 ----- <u>사무국의 사무분장</u> 등은 따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 등(발췌)

□ 지방자치법 제90조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와 같다.

[별표 4] <개정 2018. 2. 20.>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명	설치대상
의회사무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회사무국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u>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별표 3 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구간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군</u>
의회사무과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군·구, 별표 3 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구간의 기준을 적용받는 군

2.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구분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과장 또는 담당관
시·도	서울특별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그 밖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시·군·구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별표 3] <개정 2018. 2. 20.>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구 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중간생략		중간생략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구·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공직선거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구·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별표 1] <개정 2010.2.11., 2014.2.24., 2018. 3. 26.>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 의원정수(제2조 관련)

구 분 구·군별	의 원 정 수		
	계	비례대표의원정수	지역선거구의원정수
계	116	14	102
중 구	7	1	6
동 구	16	2	14
서 구	11	2	9
남 구	8	1	7
북 구	20	2	18
수 성 구	20	2	18
달 서 구	24	3	21
<u>달 성 군</u>	<u>10</u>	<u>1</u>	<u>9</u>

서 명 날 인 서

의 원 명	서 명	날 인
김 은 영		
도 일 용		

